

配合飼料價格은 이렇게 변한다

조 병 대

(농수산부 사료과)

사료가격의 변동은 항상 우리를 불안케 한다. 지금까지의 사료의 가격결정 방법 및 변천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배합사료가격 결정방향 등을 알아본다

1. 서 론

지난 70년대는 한국의 산업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라고들 한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식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일인당 축산물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78년도에는 그 부족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끔 되었다.

축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처하려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도 사료가격의 안정적 공급이 선결문제였다.

축산물의 생산비 중에서 사료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50~6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사료가격이 높아지면 축산물생산비가 많아져 축산물가격이 높아지고, 사료가격이 낮아지면 축산물 생산비가 적게 들어 축산물가격이 낮아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부로서는 축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료가격의 안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사료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양동에 따르는 국내사료가격의 직접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75년 7월31일부터는 사료용 수입곡류의 안정기준가격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배합사료가격의 결정방법과 사료용 수입곡류의 안정기준가격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배합사료가격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배합사료가격의 결정방법 및 변천내역

배합사료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기능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70년대를 통털어 보면 배합사료가격의 결정은 자율가격보다 지도가격제도를 실시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더우기 70년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에서는 가격안정정책을 주요정책으로 삼아 음에 따라 가능한 한 사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여 축산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왔다.

배합사료가격 결정방법 및 변천내역

기 간	가 격 결 정 방 법	경 위 및 사 유	가 격 (원/kg)	
			산란초기	육계전기
72. 8. 3 이전	• 시도지사가 가격사정		38.05	46.68
72. 8. 3~ 74. 10. 3	• 농수산부 장관이 대표적인 산란용(산란초기)사료 가격을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며 시도지사가 동가격 범위내에서 가격사정	• 3회의 가격인상 • 국제곡물가격 인상(옥수수, 대두, 어분) • 국내산 원료의 가격인상 • 제조관리비현실화(26%)	39.12 56.16 70.50	47.44 60.00 85.44
74. 10. 4~ 75. 12. 31	• 자유가격판매제	• 경제기획원에서 배합사료 가격을 통제가격에서 해제하며 자유경쟁화	86.19	105.05
76. 1. 1~ 77. 6. 30	•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주종품목: 3가지) • 기타품목을 자율규제	• 물가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강류가격의 인상(시가의 85%)	86.03	110
77. 7. 1~ 77. 8. 11	• 부가가치세 실시로 배합사료가격 1.58%인상	• 부가가치세에 의한 의제면제	87.39	111.74
77. 8. 12~ 78. 5. 31	•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여 품목별로 최고가격을 지정(29개 품목)	• 도입곡류옥수수 공급가격 인하(135\$→130\$) • 제품감량비율인하(4%→3%) • 하역감량인하(0.6→0.24) • 이윤인하(4%→3%) • 제조관리비 현실화	101.43	122.92
78. 6. 1~ 79. 3. 31	• 현행가격범위내에서 품목별 최고가격을 재조정(30개 품목)	• 배합사료성분량 한도고시의 개정 • 의제매입 대상품목 변경 • 도입옥수수 공급가격 인상(130\$→135\$) • 이윤인상(3%→4%) • 제품감량인하(1.5%→1.2%) • 제조관리비 현실화	101.03	122.85
79. 4. 1~ 80. 1. 21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여 품목별 최고판매가격을 상향조정(30개 품목)	• 강류배합비조정(20%→15%) • 제조관리비 현실화(8,126→9,797) • 제조감량인하(1.2%→1.0%) • 대두박공급가격인상(130.07→139.70) • 탈지강가격인상조정(1,350원→1,535원)	104.25	128.24
80. 1. 22~ 80. 6. 30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여 품목별 최고판매가격을 지정(30개 품목)	• 사료안정기준가격 인상조정(135\$→160\$) • 국산옥수수 사용에 따라 도입옥수수가격 차이 합산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박가격조정 (295.15\$→309.50\$) • 국내유가 인상에 따른 제조관 리비 현실화(9,797원→11,258원) • 80.1.12일 환율조정에 따른 국제곡물(옥수수, 대두) 가격조정 	
80. 7. 1~ 현 재	전 배합사료가격의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곡물가격변동및 제반가격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빈번한 가격조정곤란 • 환율변동과 금리인상에 따른 수입원료의 공급가격 수시변동으로 가격고정이 곤란 • 가격제한 및 배합사료 성분량 설정으로 품질의 자율경쟁 개선 저해 • 고시대상 품목의 점진적감축 (30개→20개) • 강피류의 정부고시가격유지 • 부원료의 공급가격 자율화및수출입조절로 가격안정 도모 	

위와같이 배합사료가격은 정부의 가격안정 억제정책과 함께 변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8.3긴급조치 이전〉

8.3긴급조치 이전에는 배합사료가격은 거의 자율화되어 있었다. 정부는 원료만을 배정하고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면 시도자사가 사정하여 결정된 범위내에서 사료를 판매토록 했다.

그러나 8.3긴급조치로 제물가동결이 취해지자 주무장관인 농수산부장관이 대표적사료인 산란초기사료의 가격을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하며 시도지사는 동범위내에서 가격을 사정토록 하였다.

〈73년도의 3회 가격인상〉

73년도에는 사료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하에서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3차례나 불

가피하게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때 대체가능한 국내자원이 없다는 것을 실감케 되었다. 따라서 75년에는 수입사료가격 안정 기준제도를 마련하여 가격의 완충역활을 하게 하고 양축가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줄이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자율가격제도〉

국제곡물가격이 안정되자 국내의 사료수수 증가로 인한 국내산 자원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고자 정부관리 양곡부산물 등의 가격을 계속하여 정부의 고시가격으로 지정하여 배합사료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74년부터 75년까지는 시장수요와 가격의 안정으로 배합사료 가격통제를 해제하여 업체간의 경쟁을 자율화하도록 했다.

〈수입사료의 안정기준가격제도〉

세계적인 곡물시장의 변동에 대한 국내 배합사료가격의 충격으로 인한 우리나라 축산

년도별 사료용수입곡류의 안정기준가격

년 도 별	산지별	품목명	기 준 가 격		적 요
			\$	₩	
75. 7/31	태국산	옥수수		72,750	C & F \$150 기준
75. 12/31	미국산	"		74,205	C & F 153 기준
76. 1/ 1	태국산	"	132		
76. 1/ 1	미국산	"	135		
77. 8/11	없 음	수 수	130		76. 8. 31. 시행
77. 8/12	태국산	옥수수	127		
	미국산	"	130		
	없 음	수 수	125		
78. 5/21	없 음	소 맥	125		77. 9. 2. 시행
78. 5/22	없 음	옥수수	135		
	없 음	수 수	130		
79. 6/ 4	없 음	소 맥	132		
79. 6/ 5	없 음	옥수수		70,500	C & F \$135 기준
	없 음	수 수			기준가격제로 철폐
80. 1/21	없 음	소 맥	160		"
80. 1/22	없 음	옥수수	160		
80. 10/30	없 음	옥수수	185		
80. 12/24	없 음	옥수수	195		

업의 경기불황의 연속 등을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완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입사료의 안정기준가격을 75년 7월부터 실시하였다.

즉, 배합사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한 사료안정기금은

- ① 사료도입자금의 융자
- ② 사료자원개발의 지원
- ③ 축산물가격 안정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 제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양축가 보호를 기하여 왔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과 부가가치세 실시로 인한 가격변동〉

76. 1. 1일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과 77. 7. 1부터 부가가치세제도 실시에 따라 가격변동은 있었으나 이 당시에는 정부관리 양곡부산물의 가격을 시가의 85%정도 인상한 요인 이외에는 별다른 가격상승 요인이 없었다. 공정거래법 실시에

따라 주종품목은 산란초기, 종돈, 착유 1호로 3종만 가격사정을 실시하였으며, 오히려 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서 의제매입 대상품목의 변동으로 인상율이 1.58%나 떨어지게 되었다.

〈배합사료품목의 가격지정〉

77년 8월 12일 국제 도입옥수수 가격이 135\$대에서 130\$대로 하락함에 따라 안정기준가격을 조정하고 기타 제품의 감량, 이윤과 제조관리비의 현실화 등 조정을 거쳐 배합사료에 대하여 29개 품목에 걸쳐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

78년 6월 1일에 일부 배합사료별 성분량 한도고시 개정에 의한 가격조정, 79년 4월 1일 국내원료량(강피류) 제한에 따른 일부 배합비 변경으로 인한 가격조정, 80년 1월 22일 다시 국제 옥수수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조정 등 매번마다 제조관리비, 제조감량, 국

내산 대두박 공급가격, 국산옥수수 사용, 국내 유가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의 인상 등 실로 가격조정을 위하여 제변동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을 지정한다든가, 시기에 비추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설사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배합사료가격 즉, 공급의 과잉, 또는 부족시에는 가격이 지정되어 있는 한 품질과 가격과의 관계가 상반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배합사료가격의 자율화)

지난 70년대에는 가격의 자율화보다는 통제가격을 시행하는 경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우리 경제를 민간 주도형으로 유도하듯이 배합사료의 가격결정도 시장기능에 맡겨 자율적인 품질경쟁 체제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80년 7월 1일에 이르러서는 가격을 자율화하게 되었다.

3. 앞으로의 배합사료가격 결정방향

가격자율화 이후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결정을 하도록 유도한 바도 있고, 사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결정 방법이 최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기능에 최적조건을 계속 만들어 주기 위하여 도입에 의존하는 옥수수의 사료안정기준가격을 유지하여 원료의 수급을 원활히 할 것이며, 정부관리 양곡부 산물을 가능한 한 사료효율이 높은 배합사료

로 유입시켜 정부고시가격에 의한 공급을 하고 기타 사료자원은 국내산의 수급에 따라 수출입을 통해 신축성 있게 대처하므로써 가격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사료 자급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옥수수의 안정기준가격을 적절히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배합사료 업체는 적절한 자원배분에 의한 효율적인 사료생산을 통하여 양축가에 의해 사료품질을 평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자율적으로 품질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배합사료 가격은

첫째,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여 최소가격으로 최대효과가 나오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축산물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범위내에서 배합사료공장의 합리적 경영을 통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외상이나 판매조건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가격으로 양축가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태는 없어야겠다.

배합사료공장은 양축가에게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양기법 제시로 사양상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양축가의 경영이 적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료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끝으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료생산체제는 양축가에게 적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한 배합사료공장측에 적자가 되어서도 안 되며, 양축가나 사료공급자가 다같이 적절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저해요인이 제거된 여건하에서 배합사료 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결된 의지로 업계불황 이겨내자